

의안 번호	2499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11. 11.(화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4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·홍보에 필요한 교육자료와 홍보물품 등의 제작 및 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교육·홍보에 필요한 물품 등 제작·배부 관련 규정 신설(안 제26조제4 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다. 근거법규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조, 제6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순정)

- 오늘날 폭염·폭우 등 이상기온에 따른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정책 개발과 실천이 중요하게 됨

- 무엇보다 주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을 높이고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야 함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·교육·홍보 등 추진을 위해 홍보물품의 제작과 배부할 수 있는 법적·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- 상위법인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조에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관계 법령개선 및 제반 여건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, 제67조에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시책개발, 협력체계 구축, 교육·홍보 강화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므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,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7조(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)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·소비·활동 등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(이하 “녹색생활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·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,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
1.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
2. 승용·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
3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

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·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